

과천시공사 공연·전시 입장권 관리지침

제정 2020.02.05. 지침 제30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“과천시공사”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입장권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명확하고 투명한 입장권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입장권이라 함은 공연장의 객석으로 입장할 수 있는 공연 입장권과 전시장으로 입장할 수 있는 전시입장권을 말한다.

제3조(유료입장권) 유료입장권은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발권된 입장권을 말한다.

제4조(예술초대권) ① 예술초대권은 공연장 및 전시장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하며 지원사업 심사, 공연장 교류 등을 위한 무료 입장권으로써 기획된 공연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공연계, 언론계, 유관기관 및 기획의도에 따른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초대권을 말한다.

② 예술초대권은 교환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예술초대권 운영기준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예술 초대권을 운영한다.

1. 예술초대권의 발권 비율은 극장별 회당 별표1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, 부득이한 경우 공연 2일전 여분의 좌석 범위 안에서 사전 결재 후 추가 발권을 진행할 수 있다.
2. 공연장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자 등에게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권할 수 있다.
3. 마케팅 프로모션 진행시에는 공연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발권할 수 있다.
4. 발권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통한 발권을 원칙으로 하며, 담당자는 발권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외부기관 기금지원사업, 신작 등 공연특성에 따라 문화 나눔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6조(유보석) ① 유보석은 입장권의 중복발권, 좌석결함, 관객의 좌석변경요구 등 공연장내 민원 및 사고에 대비한 동일 및 상급좌석을 뜻하며 매 공연 시 유보석을 두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유보석의 비율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.

② 제5조에서 정하는 별표1에 해당하는 객석도 필요에 따라 유보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예술초대권 운영기준 (제5조제1항제1호 관련)

발권 분야	대 상	비고
지원사업 심사	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예술위원회, 한국문예회관연합회, 경기문화재단 등	기관당 2매
공연장 교류	한문연 회원기관 및 공연단체관계자	기관 및 단체별 2매
공연평가	모니터링 요원	1인 2매
마케팅	지역언론사 (중앙일간지, 지역일간지, 지역신문 등)	언론사별 2매
	ABC방송	마케팅 협약에 따른 매수
	마케팅 프로모션, 알뜰관람 인솔교사 등 다량구매자(20매 이상)	공연특성을 반영한 매수

[별표 2]

유보석 비율 및 위치 (제6조제1항 관련)

구분	대극장	소극장	계	비율(%)
총 객석 수	919	375	1,294	
유보석 수	10	6	16	1.2%
※ 유보석 위치 : 공연별 최고등급 좌석				